

결 의 결 과 원 안 대 로 가 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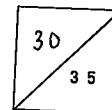
의 안 번 호	회 의 차 수	회 의 일 자	제 의 자
53	25	1995. 11. 16	홍재 이 경 식

의 안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용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외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65조

제외취지 최근 경기·물가의 안정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통화 및 시장금리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제3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의 나머지 부분을 조기 시행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

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「금융기관 여수신에을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조 ~ 제5조 (생 략) (신 설)		제1조 ~ 제5조 (현 행 과 같 음) 부 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〈별 표〉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		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				- 시행일자 명시 - 시행일전에 계약된 1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 최고이율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〈별 표〉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		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				- 정기예금 금리 전면 자유화 - 만기에 관한 사항을 「규정」으로 일원화 - 3개월이상 예치분에 대한 금리자유화 - 3개월이상 예치분에 대한 금리자유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</th><th>분</th><th>이</th><th>율</th></tr> <tr> <td>1</td><td>정기예금</td><td>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6개월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</td><td></td></tr> <tr> <td>2</td><td>저축예금</td><td>연 3.0% (개인에 한함)</td><td></td></tr> <tr> <td>3</td><td>자유저축예금</td><td>연 9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환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</td><td></td></tr> <tr> <td>4</td><td>가계당좌예금</td><td>연 1.0% (개인에 한함). 다만, 3개월 평균 예금잔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.0%</td><td></td></tr> <tr> <td>5</td><td>기업자유예금</td><td>연 4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</td><td></td></tr> </table>		구	분	이	율	1	정기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6개월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		2	저축예금	연 3.0% (개인에 한함)		3	자유저축예금	연 9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환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		4	가계당좌예금	연 1.0% (개인에 한함). 다만, 3개월 평균 예금잔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.0%		5	기업자유예금	연 4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	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구</th><th>분</th><th>이</th><th>율</th></tr> <tr> <td>1.</td><td>정기예금 (만기 1개월이상 5년이하)</td><td>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</td><td></td></tr> <tr> <td>2.</td><td>저축예금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/tr> <tr> <td>3.</td><td>자유저축예금</td><td>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연 3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 환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</td><td></td></tr> <tr> <td>4.</td><td>가계당좌예금</td><td>(현행과 같음)</td><td></td></tr> <tr> <td>5</td><td>기업자유예금</td><td>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연 2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</td><td></td></tr> </table>				구	분	이	율	1.	정기예금 (만기 1개월이상 5년이하)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2.	저축예금	(현행과 같음)		3.	자유저축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연 3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 환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		4.	가계당좌예금	(현행과 같음)		5	기업자유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연 2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		
구	분	이	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정기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6개월미만 만기의 경우에는 연 5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	저축예금	연 3.0% (개인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	자유저축예금	연 9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환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	가계당좌예금	연 1.0% (개인에 한함). 다만, 3개월 평균 예금잔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3.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기업자유예금	연 4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	분	이	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.	정기예금 (만기 1개월이상 5년이하)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.	저축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.	자유저축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연 3.0% (개인에 한하며 1인당 5,000만원 이내. 다만, 이자 환가로 인한 초과액은 예외로 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.	가계당좌예금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	기업자유예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. 다만, 3개월 미만 예치분에 대해서는 연 2.0% (법인과 개인기업에 한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행			개정 (안)		비고
구분	이유	내용	구분	이유	내용
6 보통예금	연 1 0%		6. 보통예금	(현행과 같음)	
7 별단예금	원칙적으로 무이자 다만, <u>오부리시 연 2 0%</u>		7 별단예금	원칙적으로 무이자 다만, <u>이자지급 필요시 연 2.0%</u>	- 저구 수정
8 당좌예금	무이자		8 당좌예금	(현행과 같음)	
9 정기적금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만기 1년 이상)		9 정기적금 (만기 6개월이상 5년이하)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- 최단만기 단축(1년 → 6개월) 및 등 금리 자유화 - 만기에 관한 사항을 「규정」으로 일원화
10 근로자정기저축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10 근로자정기저축 (만기 3년이상 5년이하)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- 연단위 만기제한 폐지 - 만기에 관한 사항을 「규정」으로 일원화
11 근로자주택마련저축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만기 1년 이상)		11 근로자주택마련저축 (만기 1년이상 10년이하)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- 만기에 관한 사항을 「규정」으로 일원화
12 장기주택마련저축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계약기간은 10년)		12. 장기주택마련저축 (만기 10년)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- 조문 정비

원			행		계		정 (단)		비 고	
구 분		이		구 분		이		비 고		
13 상호부금	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반기 1년 이상)		13 상호부금 (반기 6개월이상 5년이하)	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- 최단반기 단축 (1년 → 6개월) - 및 동 금리 자유화 - 연단위 만기제한 폐지 - 만기에 관한 사항을 「규정」으로 일원화		
14 주택부금	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(반기 1년 이상)		14. 주택부금 (반기 6개월이상 5년이하)		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		
15 상업어음일반 매출		연 7.0%. 다만, 만기가 30일이상이고 액면 금액이 2,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15. 상업어음일반 매출		연 7.0%. 다만, 만기가 30일이상이고 액면 금액이 1,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		
16 무역어음일반 매출		연 7.0% 다만, 만기가 30일이상이고 액면 금액이 2,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16 무역어음일반 매출		연 7.0% 다만, 만기가 30일이상이고 액면 금액이 1,000만원이상인 어음의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		- 금리가 자유화된 거액 상업 어음 및 무역어음 일반매출 최저금액 인하 (2,000만원 → 1,000만원)		